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김정희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3. 11. 3.(금)
- 검토기간: 2023. 11. 6.(월) ~ 11. 10.(금)

2. 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외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나,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2022년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등과 더불어 지역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및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계획” 등을 발표함으로써 민관협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자 함.¹⁾
- 또한 법 제9조의2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제3항에서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포상은 추천을 거쳐 달서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 제10조와 포상시기를 정한 조례 제11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 안 제7조(포상제외)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충돌되고, 공적 등이 우수한 경우에 수여하는 포상은 개별사례에 대한 별도 평가가 아니라

1) 특히 2023년 7월 17일에서 9월 8일까지 진행된 “2023년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는 기존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 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5종을 포함해 모두 44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 제7조(포상제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p><삭제></p>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생략>